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17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조승환·강민국·이성권

곽규택 · 김태호 · 김종양

권영세 · 안철수 · 권영진

유용원 · 임이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여,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업의 경우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제3자 제공의 근거가 없어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 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 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신설).
-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를 점 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등).
- 다. 미성년자, 기업 등이 대리인을 통해 제3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 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43조의2제8항 신설).
- 라. 기업이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요구서류의 최소화)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서비스를 접수·처리할 때에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43조의 이 따른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등을 통해 그 행정서비스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 기업 등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요구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정보의 확인, 구비서류 요구현황 점검 및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 ⑧ 정보주체 및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은 제1항 및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3(기업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기업(「부가 가치세법」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해당 기업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정보"라 한다)를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지정하는 자로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자(제43조의2제1항각 호에 따른 제3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도록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기업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업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1.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있을 것
 - 2.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하려는 업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 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업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3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전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 ⑦ (생 략) <<u>신 설></u>

⑧ 제1항부터 <u>제7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 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4]	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정보주체 및 제43조의3제1
	항에 따른 기업은 제1항 및 제
	4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대리인을 통하여
	<u>할 수 있다.</u>
	<u> ⑨</u> <u>제8항</u>
	<u>.</u>
 	43조의3(기업 본인에 관한 행
	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행정기관등
	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

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 로 해당 기업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 (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 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정보"라 한다) 를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지정하는 자로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자(제4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3자를 말한다) 에게 제공하도록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기업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 업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 다.
- 1.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가 있을 것
- 2.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하 려는 업무가 정보주체의 의사 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업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3조의2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 다.